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 박준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72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법률안 주요내용	3
2. 법률안 검토	4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폐지	4
나.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대한 검토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준태의원 등 17인
2. 발 의 일 : 2025. 2. 3.
3. 회 부 일 : 2025. 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였으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공수처 출범 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하는데 반해, 수사는 물론 기소 실적까지 전무해 무용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음. 특히 공수처는 출범 이후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직접 기소한 사건은 4건으로 기소율이 0.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최근 공수처는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도 위법 수사를 강행하며,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또, '인권친화적 기관'을 표방했던 초기 취지와 달리 의도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접견 금지, 강제 구인, 서신 금지 등 반인권적 조치를 주저 없이 시행하고 있음.

이외에도 공수처법의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정하는 이른바 '영장 쇼핑'에 나섰고,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 55경비대대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동 법률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수처를 폐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법률안 주요내용

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을 전면 폐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임.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안 부칙 제1조),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관 받아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며(안 부칙 제2조), 수사 중인 사건은 관할 검찰청으로 이관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또한, 공수처 소속 공무원은 법무부, 대검찰청, 각 고등검찰청, 각 지방검찰청 또는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안 부칙 제4조), 공수처법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타법개정하여, 공수처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5조).

2. 법률안 검토

가. 공수처 폐지

1) 공수처 제도 개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와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2020년 1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설립된 기관으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일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설계되었음.

공수처는 ①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 ②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확보, ③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 분산을 통한 권력남용 방지, ④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주 목적으로 하며, 처장과 차장, 25명 이내의 수사처검사(처장과 차장 포함), 40명 이내의 수사처 수사관, 20명 이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10,445건(2025년 5월 31일 기준)의 사건을 접수하였으나 2024년 2건, 2025년 1건의 사건(3건의 확정 사건 제외)에 대해 공소제기 및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 접수건수 대비 기소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비판이 존재함.

<공수처 접수 및 처리 건수, 세부 접수 현황>

(단위: 건, 2025. 5. 31. 기준)

총 건수 (‘21. 1. 21.~ ‘25. 5. 31.)	구 분			접 수	처 리	진 행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전 (‘21. 1. 21.~‘22. 3. 13.)			3,025	3,025	—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22. 3. 14.~‘25. 5. 31.)			7,420	6,450	970
	계			10,445	3,025	970
사건사무규칙 개정 (‘22. 3. 13.) 이전	이첩요청	인지통보	이첩	고소·고발· 진정 등	기 타	계
	1	226	92	2,704	2	3,025
사건사무규칙 개정 (‘22. 3. 14.) 이후	이첩요청	인지통보	이 첩	고소·고발· 진정 등	기 타	계
	13	436	193	6,688	94	7,424

<공수처 접수사건 세부 처리 현황>

(단위: 건, 2025. 5. 31. 기준)

사건사무규칙 개정(’22. 3. 13.) 이전														
직접 처리						다른 수사 기관 이첩						계		
입 건		불입건		소계		검찰		경찰		기타			소계	
24		381		405		2,162		452		6		2,620		3,025
사건사무규칙 개정(’22. 3. 14.) 이후														
직접처리							다른수사 기관 이첩						계	
공제			내사	진정	조사	소계	구 분	공 제	내 사	진 정	조 사	소 계		
공소 제기	공소제기 요구	불기소 등	수사불 개시등	공판 종결 등	입건 등									
13	11	1,352	391	3,606	8	5,381	0	370	0	696	3	1,069	6,450	

2) 공수처 폐지에 대한 검토

법률안은 현재 공수처의 수사범위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범위와 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공수처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저조한 수사 실적으로 수사 효율성 및 전문성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는 것임. 이를 통해, 수사기관 체계를 재정립하여 수사기관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폐지법률안의 취지로 보임.

다만,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기존 사정기관의 수사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 강화였는바, 공수처 폐지 이후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를 어느 기관이 담당할 것인지,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의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공수처가 수사 중이거나 공소제기한 사건의 이관절차가 적절한지, 그리고 이관 과정에서 사건 처리의 연속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수처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 설치 여부는 전체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수사기관의 공정성·중립성 보장 및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나, 초기 단계에 있는 기관 폐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따른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법무부는 공수처 폐지 여부는 공수처 출범 이후 그간의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나, 공수처 사건·사무 이관, 공수처 인력·예산 이관,

「공수처법」外 법률 개정 소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나.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대한 검토

1) 시행일(부칙 제1조)

법률안은 공수처법 폐지를 공포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의 입법정책적 폐지는 인력 이관과 사건 이관, 관련 법률 개정 등 공수처법 폐지 후 조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관련하여 해당 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시행일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사건·사무 이관(부칙 제2조, 제3조)

법률안은 공수처 폐지 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관을 받고, 수사 중인 사건은 「검찰청법」 제3조1)에 따른 관할 검찰청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즉, 공수처의 사건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居所 또는 현재지인 각 지방검찰청 등으로 이관하는 것인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정 검찰청으로 이관 필요성, 검찰의 수사권 범위

1)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 ③ (생략)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居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밖의 사건에 대한 검찰청 이관의 적정성, 공수처 폐지 전 수사처검사가
진행한 수사·재판상 행위에 대한 효력부여를 위한 경과규정의 필요성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인력 이관(부칙 제4조)

법률안은 공수처의 수사처검사·수사처수사관·그 밖의 공무원 등을 법무부·
대검찰청·각 고등검찰청·각 지방검찰청 또는 중앙행정기관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의 직급체계가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점, 공수처장 및 차장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는 점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이에 관하여 **법무부**는 ① 공수처 폐지의 경우에도 법적안정성, 사건
관계인들의 기본권 보장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② 사건·사무 이관은 기구특검적인 공수처의 성격을 고려하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 ③ 수사처검사 등을
별도 절차 없이 즉각 법무부 또는 검찰청 소속으로 간주하는 것은
임용자격, 임기, 연임 제한, 직급 체계 등 차이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④ 공수처 검사가 폐지전 한 행위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63